

제28조(처분신청서 등)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 · 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6. 8. 31., 2022. 1. 21.>

1. 처분사유서
 2.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처분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
 3.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- ② 영 제42조제2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"이란 45일을 말한다.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

제6장 물류 교통 · 환경 정비사업 <신설 2022. 8. 24.>

제29조(물류 교통 · 환경 정비지구의 지정) 시 · 도지사는 물류 교통 · 환경 정비지구(이하 "정비지구"라 한다)를 지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1. 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 교통 · 환경 정비계획(이하 "정비계획"이라 한다)
2. 그 밖에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0. 12. 10.]

제29조의2(물류 교통 · 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) 시 · 도지사는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.

1. 영 제46조의7제3항 각 호의 사항
2. 그 밖에 정비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0. 12. 10.]

제7장 보칙 <신설 2022. 8. 24.>

제30조(증표)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.

제31조(수수료) ① 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.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·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4. 7., 2015. 8. 6.>

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.<신설 2015. 8. 6.>

1. 수수료를 과오납(過誤納)한 경우: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
2. 등록 · 인가 등을 하기 전에 신청인이 해당 등록 · 인가 등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: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

제32조 삭제 <2010. 8. 4.>

제33조(자본비용의 기간산정) 영 별표 2에서 "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"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. <개정 2008. 3. 14., 2013. 3. 23.>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 · 도로 · 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
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
3. 태풍 · 해일 · 홍수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발생
4. 문화재 발굴, 분묘 처리,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물류단지개발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

제34조(규제의 재검토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 <개정 2023. 7. 10.>